

## ▶ 저작권 침해 사례

### 1. 인터넷에서 영화들 불법 방영한 사례

---

---

#### 【사건개요】

원고: 미국영화협회

피고: 북경재선구주신식기술복무유한공사(北京在线九州信息技术服务有限公司)

북경재선구주신식기술복무유한공사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티엔티엔짜이시엔’ (天天在线 www.116.com)에서 대중들에게 ‘트리플엑스2’ 및 ‘트로이’ 등의 영화를 상영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판권국은 이 안건을 북경시판권국에서 조사하도록 하였고 북경시판권국의 조사 결과, ‘티엔티엔짜이시엔’ 사이트는 신식산업부에 등록된 인터넷사이트이지만(등록번호: 京ICP证031060), 이 인터넷사이트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트리플엑스2’ 및 ‘트로이’ 등의 영화를 불법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소가 성립한다고 밝혀졌다. 북경시판권국은 북경재선구주신식기술복무유한공사가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고 과태료 9만위안을 납부하라고 행정처벌하였다.

### II. ‘타이션왕’ 소프트웨어 침해 사례

---

---

#### 【사건개요】

원고: 미국상업소프트웨어 연맹

피고: 타이션왕(泰神网)

‘타이션왕(泰神网 www.taishen.org)’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Autodesk CAD, Microsoft Office 등 357종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판권국은 인터넷IP주소로 검사한 결과 그 인터넷사이트의 서버가 호남성 이양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호남성판권국에 조사를 지시했다. 호남성판권국의 조사결과, ‘타이션왕(泰神网)’은 호남성 이양시 자강기계공장의 직원 자오원위가 개인적으로 개설한 사이트이며 신식산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2년 자오원위는 이양시 우체국 신식기술분공사에서 가상서버를 빌려 ‘타이션왕(泰神网)’의 이름으로 ‘taishen.org’와 ‘huohuo.com’ 두 가지의 도메인을 신청하였으며 동일한 IP주소(61.137.117.131)로 등록하였다. 자오원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utodesk CAD, Microsoft Office 등 357종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사이트에 복제하여

무료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CD를 제작하여 한 장에 인민폐 25위안의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였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2005년까지 차오천위가 얻은 불법이득은 인민폐 3만위안에 달했으며 컴퓨터소프트웨어 시장의 정상적인 경영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 호남성판권국은 차오천위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하고 과태료 1만위안과 서비스에 사용된 하드웨어 몰수, 사이트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 Ⅲ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불법판매 사례

#### 【사건개요】

원고: 미국상업소프트웨어 연맹(BSA)

피고: 소프트웨어 리에쇼우 사이트

‘소프트웨어 리에쇼우(软件猎手)’ 사이트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utodesk Autocad,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등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판매하였다. 상술한 상품의 권리자들은 협회의 구성원으로 Autodesk, Microsoft, Bentley, CNC 등의 회사들이다. 국가판권국은 IP추적으로 이 인터넷사이트의 서버는 북경시전신공사에 위치하며 IP주소가 북경, 사천, 칭다오 등 지역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국가판권국은 본 사건을 북경시판권국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1일 북경시판권국은 사천성, 칭다오시 판권국에 증거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결과, 이 인터넷사이트 서버는 북경시전신공사 IDC 기계실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법집행기관의 조사결과 신고자가 신고한 권리침해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인터넷사이트는 신식산업부에 등기하지 않은 불법 인터넷사이트이기 때문에 북경시판권국은 북경시통신관리국에 그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청하고 북경시 전신공사에게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 Ⅳ. 미국영화 ‘슈렉2’ 사건

#### 【사건개요】

《슈렉2》는 미국 드림웍스회사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으로 2004년 5월 미국 등 지역에서 상영되었으며 동년 8월 10일에는 중국에서도 상영되었다. 미국 드림웍스는 중국 국가판권국에 슈렉2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음반영상제품으로 출판하기 전에 북경, 상해, 광둥 등 13개 도시에서는 이미 39종류의 불법복제판이 노점상,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통되어 권리침해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신고하였다.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음반영상제품의 권리침해 불법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국가판권국은 《‘슈렉2’ 불법복제 음반영상제품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였고, 각 지역의 판권국은 국가판권국의 통지와 불법복제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신속히 관련 대책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동년 11월 30일 북경, 상해, 광둥, 중경, 안휘, 요녕, 강소, 복건, 사천, 산둥, 길림 등 지역의 판권행정관리기관은 2600여 곳 음반영상제품 판매상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슈렉2 CD 1140장을 몰수하고 음반영상제품 판매업체 2곳을 직권말소시켰으며 52곳에는 과태료 58,000위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벌을 했다. 또한 조사에서 드러난 슈렉2의 불법복제 음반영상제품의 불법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사이트 2곳도 처벌하였다.

## V. '노스페이스'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사례

### 【사건개요】

2004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황모와 까오모는 'THE NORTH FACE' 상표의 권리자인 노스페이스의류주식회사(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경시 조양구 중관촌에서 'THE NORTH FACE' 상표를 도용한 방한복을 생산하였다. 모두 4013벌의 외투와 96벌의 외투를 생산하였다. 생산에 투자한 금액은 인민폐 5천2백2십2위안이었고 이를 통한 불법수익은 모두 인민폐 7만7천4백위안 이었다.

등산용보호자켓과 방한후드자켓 등의 상품에 쓰이는 'THE NORTH FACE' 상표와 'THE NORTH FACE' 도안은 중국 상표국에 출원등록된 것으로서 본 상표의 전용권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북경시 공상국 조양분국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3조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실시조례》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5일 황모와 까오모에 대해 즉시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했고, 권리침해상품 방한복 4013벌과 외투 96벌을 압수했으며 과태료 인민폐 20만 위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했다.

### 【시사점】

①현재 중국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은 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사건 보다는 권리자의 허락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대다수이다.

②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적 증거확보이다. 물적 증거수집 시 침해자측에서 발뺌하기 쉽거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항변의 여지가 있는 증거자료인 경우 공증인을 대동하여 증거수집 자료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었을 경우 증거확보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해두고자 할 때 공증인 입회 하에서 캡처하고 그 자료에 대한 공증을 받는다.)

③침해자의 거래처, 수익규모 등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생산자(제작자), 유통판매자, 소비자까지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유통경로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규모파악에 도움이 된다. 또한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권리자가 그 피해액을 산출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의 불법수익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규모에 따른 손해

배상금액을 책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권리침해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고 권리침해자가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라면 행정구제, 형사구제, 민사구제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VII. 상표도용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한 사례

장소	도용상표	사건개요
광둥(广东)	'HP', '레노보', '캐논'	'HP', '레노보', '캐논'을 도용하여 프린터 잉크포장지 50만장(인민폐 125만위안)을 인쇄제작
심천(深圳)	'Nokia', 'Motorola', 'SonyEricsoon'	'Nokia', 'Motorola', 'SonyEricsoon'의 상표를 도용해 핸드폰 포장박스 와 설명서 등 157542개 제작
심천(深圳)	'루미비통'	루미비통 상표를 도용하여 만든 완제품 여성핸드백 896개와 반제품 296개를 발견
복건(福建)	'나이키', '아디다스'	'나이키'상표도안을 도용하여 운동화 1,600켤레와 '아디다스'의 상표도안을 도용하여 운동화 12,428켤레를제작
복건(福建)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옴부라', '퓨마'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옴부라', '퓨마' 등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 1,643,600개를 발견

위의 사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4조 규정과 《행정법 집행기관범죄 혐의안건 이송 규정(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소재지 공상국에서 소재지 공안국으로 이송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였다.

### 【참고의견】

중국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많이 달라졌다. 국내기업 외국기업을 막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 고발 또는 소송제기가 있을 때 종전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제조자에서부터 유통업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넓혀가며 그들을 상대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구제요청을 하여 실효를 거두고있다. 우리 기업도 중국에서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각가지 채널을 통해 능동적이고 끈질기게 구제에 노력을 경주할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은 자기 권리보호에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중국의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곧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될 것이다.